기금운용 및 관리규정

제　　정 2005. 04. 06.
개　　정 2008. 10. 14.
개　　정 2009. 12. 29.
개　　정 2012. 05. 09.
개　　정 2015. 03. 30.
개　　정 2015. 10. 12.
개　　정 2018. 07. 20.
개　　정 2023. 12. 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5.10.12.〉

제2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설립자가 설립 당시 출연한 출연금
2.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기금으로 전입된 금액〈개정 2023.12.26.〉
3. 연구원 매 회계년도 잉여금에서 기금으로 전입된 금액
4.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전입된 기금의 과실

제3조(기금의 원본 감소)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〈개정 2009.12.29.,2023.12.26〉

제4조(기금관리위원회)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운용 및 관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 및 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
3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이사 1명 이상을 포함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과 같다.

④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간사는 연구원의 운영지원실장이 된다.〈개정 2012.5.9., 2015.3.30., 2018.7.20., 2023.12.26〉

제6조(위원회 의사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.

④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의 직무) ①간사는 위원회의 의결된 바에 따라 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②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의결된 바에 따라 기금운용 대상자를 결정하고, 기금운용 방법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한 후에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 회수 및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 계정)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기금은 예금, 신탁, 유가증권 매입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 및 관리한다.

제10조(기금의 과실) 기금의 과실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전입한 경우 외에는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장부의 비치) 간사는 기금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결산 및 보고)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8.10.14.〉

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계획)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세입·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〈신설 2008.10.14.〉

②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.〈신설 2008.10.14.〉

1. 운용방침
2. 자금운용계획(자금총괄, 수입계획, 지출계획 등)
3.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4. 기타부속서류(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등)

제14조(기금운용계획 변경)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관은 세부항목의 내용을 변경하고 추후 세입·세출예산 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〈신설 2008.10.14.〉
(단, 지출금액의 1/2이상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.)〈신설 2008.10.14.〉

제15조(회계관직) 기금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해 회계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〈신설 2008.10.14.〉

1. 기금운용관 : 원장
2. 기금출납원 : 운영지원실장〈개정 2012.5.9., 2015.3.30.,2023.12.26〉

제16조(재정보증) 기금회계관계 임·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연구원 회계규정 제8조에 준용한다.〈신설 2008.10.14.〉

제17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,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〈신설 2008.10.14.〉

1. 연구원의 청사·관사 임차 및 신축
2. 기타 연구원 운영 및 고유목적사업

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8.10.14.〉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09.12.29.〉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2.05.09.〉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5.03.30.〉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5.10.12.〉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8.07.20.〉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23.12.26.〉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